

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

(1쪽)

신고인 (등록 의무자)	성명		생년월일		전화번호 (휴대전화)	()
	소속		직위		직급 등	
	주소					
담당직무 내용	※ 법령·직제·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.					
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	직무 구분	주식명 (발행인)	관여내역			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
			일시	방법	세부내역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.

신고인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	직무에 관련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-----	---

기재요령

1. '이해충돌 직무관계 신고사항' 작성방법

- 구분' 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시오.
- ①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·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②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·조사·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③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④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⑤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·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⑥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·심의·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⑦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⑧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- '관여내역' 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, 관여방법(결재, 지시, 의견표명 등), 관여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. (예: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, 계약명 및 금액,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)
-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시오.

1.신탁(보유) 주식 내역

[illegible]

기재요령

1.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(결혼한 딸 제외)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.
2. '발행인(주식명)'란에는 상장주식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(제3시장주식)은 종목명(예:○○증권,XX전자)을 기재하고,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.
1. 가액(천원)은 백지신탁계약금액 또는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기재하십시오.
2. 신탁기관과 신탁일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금융회사와 신탁일을 기재하십시오.